



의안번호	제 2013 - 16 호
보 고 연 월 일	2013. 6. 24. (제50차 정기회의)

의
결
안
건

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등
선정의 건

제 출 자	수석전문위원
-------	--------



1. 의결 주문

제4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등 선정의 건」을 의결하여 제4기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·수정할 대상범죄를 선정함으로써 범죄별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고 관련되는 구체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 내용

가.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시 고려사항

-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
-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
- 범죄의 발생빈도
- 제1기 내지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

나.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관련 전문위원 논의 결과

- 개별 범죄군 별로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서의 적합성을 토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
- 토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

▶ 대상범죄 포함에 이견이 없었던 범죄군

- 변호사법위반
- 배임수증재

- 성매매알선 등
- 권리행사방해
- 게임물

▶ 대상범죄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범죄군

- 체포 · 감금 · 유기 · 학대
- 장물 · 손괴
- 부정수표단속법위반
- 신용,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
- 도주 · 범인은닉 · 증거인멸
- 공정거래범죄

▶ 대상범죄 제외에 이견이 없었던 범죄군

- 과실치사상의 죄
- 주거침입의 죄
- 환경범죄
- 병역법위반
- 명예에 관한 죄
- 근로기준법위반

다.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 선정 관련 전문위원 논의 결과

- 개별 범죄군 별로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토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
- 토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

▶ 대상범죄 포함에 이견이 없었던 범죄군

- 약취 · 유인
- 마약
- 횡령 · 배임

- 식품·보건

▶ 대상범죄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범죄군

- 공무집행방해
- 위증
- 무고

별지

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

제4기 양형위원회는 ○○○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

제4기 양형위원회는 ○○○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함